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**354**  발의년월일: 2019년 1월 30일

발 의 자 : 김춘례, 신원철 의원(2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안광석, 황규복,

박기재, 김생환, 홍성룡,

송아량, 최정순, 이상훈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월드컵, 올림픽 등 국내·외 스포츠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.
-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동종목의 경우 훈련 및 연습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높은 사용료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바, 학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엘리트 체육선수 기반 강화를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50% 감액하여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인식제고 및 차상위계층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호·제2호)
-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 감액

같은 조 제2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.

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     |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         |
|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| <u>.</u>               |
| 1.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|
|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~ 나. (생략)                |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다. <u>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</u>   | 다.「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</u> |
| <u>자 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</u> | <u>따른 차상위계층 및「서울</u>   |
|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              | 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         |
|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         |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          |
| <u>아니하다.</u>                | 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00분의 30 감액</u>     |
| 라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| 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| <u>마.</u> (현행 라목과 같음)  |
| 2. 별표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|
| 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~ 다. (생략)               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라. <u>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</u>  | 라.「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</u> |
| 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·2수            | 따른 차상위계층 및「서울          |
| 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              | 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         |
|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           |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          |

# 을 감액한다.

마. (생략)

<신 설>

- 3. (생략)
- 30 감액

가.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홍을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한 경기·행사

나.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·발전을 위한 행사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|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라. 65세 이상의 노인, 12세 이하 의 어린이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| 에 따른 수급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
마.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·행사

<신 설>

# 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 감액

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- 3. (현행과 같음)
- 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30%감액과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전용사용료 50%감액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(안 제10조 제1호 다목, 제2호 라목, 제4호)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- 나. 추계결과 = 1,210,105천원 비용(수입감소) 발생
  - 예상되는 비용(수입감소)이 5년동안 1,210,105천원으로 연평균 242,021천원임
  - 비용추계 전제
    - 1)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및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의 30%를 감액(안 제10조 제1호 다목, 제2호 라목) 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수 통계가 없으므로,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1인당체육시설 이용료를 활용하여 비용추계
      - 2) 초·중·고 학생운동부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시 전용사용료 50% 감액(안 제10조 4호)은 최근 3개년(16~18년) 시립체육시설 학생운동부 선수 사용 현황(서울시 체육정책과 내부자료)을 활용하여 비용추계
      - 3) 사용료 및 수강료는 2018년도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

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| 1차년도     | 2차년도     | 3차년도     | 4차년도     | 5차년도     | 합계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세입 | 소계(a)                   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1,210,105 |
|    | 1) 개인연습사용료<br>수입         | -140     | -140     | -140     | -140     | -140     | -700       |
|    | 2) 생활체육교실<br>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| -15,641  | -15,641  | -15,641  | -15,641  | -15,641  | -78,205    |
|    | 3) 전용사용료 수입              | -226,240 | -226,240 | -226,240 | -226,240 | -226,240 | -1,131,200 |
| 세출 | 소계(b)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 1        | 1        | -        | 1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□총 비용(b-a)              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242,021 | -1,210,105 |

### 1) 연간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액: 140,339원

○ 추정식 : [연평균 200시간 초과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(170,108명) x
연평균 개인연습 이용률(0.2%)] x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사용료
(1,375원) x 감면율(30%) = 140,339원

| 구 분  | 개인연습 사용료    | 개인연습<br>이용자수 | 서울시민의<br>개인 <del>연습</del> 이용률 | 차상위계층수   | 자원봉사자수<br>(200시간 초과)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2015 | 26,957,350원 | 20,181명      | 0.2%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6,400명 | 6,804                |
| 2016 | 29,855,010원 | 21,583명      | 0.2%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1,394명 | 6,545                |
| 2017 | 27,733,920원 | 19,704명      | 0.2%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2,978명 | 6,206                |
| 연평균  | 28,182,093원 | 20,489명      | 0.2%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3,590명 | 6,518                |

〈자료출처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)내부자료〉

주1.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 사용료 = 연평균 개인연습사용료 ÷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자수 = 1,375원 주2.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률 = 연평균 개인연습 이용자수 ÷ 서울시등록인구(9,857,426명,  $^{'}$ 17년 말 기준) = 0.2%

## 2) 연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감면액: 15,641,226원

○ 추정식 : [연평균 200시간 초과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(170,108명) x
연평균 프로그램 이용률(6.4%)] x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
(4,789원) x 감면율(30%) = 15,641,226원

| 구 분  | 프로그램 수강료       | 프로그램<br>이용자수 | 서울시민의<br>프로그램 이용률 | 차상위계층수   | 자원봉사자수<br>(200시간 초과)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2015 | 2,131,834,230원 | 541,133명     | 5.5%              | 166,400명 | 6,804                |
| 2016 | 3,162,276,170원 | 635,574명     | 6.5%              | 161,394명 | 6,545                |
| 2017 | 3,789,428,090원 | 720,077명     | 7.4%              | 162,978명 | 6,206                |
| 연평균  | 3,027,846,163원 | 632,261명     | 6.4%              | 163,590명 | 6,518                |

〈자료출처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)내부자료〉

주1.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 = 연평균 프로그램 수강료 ÷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자수 = 4,789원 주2.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률 = 연평균 프로그램 이용자수 ÷ 서울시등록인구(9,857,426명, '17년 말 기준) = 6.4%

## 3) 연간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액: 226,240천원

○ 추정식 : 연평균 학생운동부 경기장 사용료(452,480천원) x 감면율(50%) = 226,240천원

| 구 분     | 2016      | 2017      | 2018      | 연평균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목동실내빙상장 | 438,762천원 | 422,628천원 | 495,485천원 | 452,292천원 |
| 구의야구공원  | 70천원      | 70천원      | 425천원     | 188천원     |

〈자료출처 : 서울시 관련부서(체육정책과)내부자료〉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**2** 02-2180-7934

e-mail: yab0217@seoul.go.kr